

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

(의안번호 제693호)

예비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3. 17
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9
 다. 상 정 일 자 : 2001. 3. 27
 라. 의 결 일 자 : 2001. 3. 28

고 성 군 수

총무위원회 상정

총무위원회 수정가결

2.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

○ 예산안 총괄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2001. 예산안	기정예산안	증 감	%
합 계	139,779,275	124,297,115	15,482,160	12.5
일 반 회 계	131,627,551	115,991,994	15,635,557	13.5
특 별 회 계	8,151,724	8,305,121	△153,397	△1.8
상 수 도 사 업	2,468,296	2,468,296	0	0.0
주 택 사 업	26,013	27,052	△1,039	△3.8
의료보호기금 운영	2,717,133	3,613,000	△895,867	△24.8
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	1,127,615	1,127,615	0	0.0
농공단지조성사업	312,600	70,100	242,500	345.9
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	1,445,567	944,558	501,009	53.0
중소기업육성기금 운 용	54,500	54,500	0	0.0

3.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

○ 세 입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1.예산안	구성비	기정예산액	구성비	증 감	
합 계	131,627,551	100.0	115,991,994	100.0	15,635,557	
세	지 방 세	9,456,000	7.2	9,456,000	8.2	0
	세 외 수 입	9,308,454	7.1	7,301,454	6.3	2,007,000
	경상적세외수입	4,131,796	(3.1)	4,131,796	(3.6)	0
	임시적세외수입	5,176,658	(4.0)	3,169,658	(2.7)	2,007,000
입	지 방 교 부 세	50,264,000	38.2	38,121,200	32.9	12,142,800
	지 방 양 여 금	15,286,372	11.6	13,951,317	12.0	1,335,055
	조 정 교 부 금	1,990,000	1.5	1,990,000	1.7	0
	보 조 금	35,722,725	27.1	35,572,023	30.7	150,702
	국고보조금	19,758,539	(15.0)	20,203,833	(17.5)	△445,294
	도비보조금	15,964,186	(12.1)	15,368,190	(13.2)	595,996
	지 방 채	9,600,000	7.3	9,600,000	8.3	0

○ 세 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1.예산안	구성비	기정예산액	구성비	증 감	
합 계	131,627,551	100.0	115,991,994	100.0	15,635,557	
세	경 상 예 산	30,097,694	22.9	29,281,955	25.2	815,739
	인 건 비	14,902,535	(11.3)	14,479,666	(12.5)	422,869
	경상적경비	15,195,159	(11.6)	14,802,289	(12.7)	392,870
	사 업 예 산	95,409,956	72.5	80,102,468	69.1	15,307,488
	보 조 사 업	70,574,313	(53.6)	63,439,701	(54.7)	7,134,612
	자 체 사 업	24,835,643	(18.9)	16,662,767	(14.4)	8,172,876
출	채 무 상 환	2,967,690	2.3	3,167,690	2.7	△200,000
	지방채상환	2,967,690	(2.3)	3,167,690	(2.7)	△200,000
	예 비 비 등	3,152,211	2.4	3,439,881	3.0	△287,670
	예 비 비	1,662,955	(1.3)	2,142,069	(1.8)	△479,114
	기 타	1,489,256	(1.1)	1,297,812	(1.2)	191,444

4.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

○ 세 입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1.예산안	구성비	기정예산액	구성비	증 감	
합 계	8,151,724	100.0	8,305,121	100.0	△153,397	
세 입	지 방 세	0	0.0	0	0.0	0
	세 외 수입	5,215,877	64.0	4,365,121	52.6	850,756
	경상적세외수입	1,864,782	(22.8)	1,861,502	(22.5)	3,280
	임시적세외수입	3,351,095	(30.2)	2,503,619	(30.1)	847,476
	지 방 교 부 세	0	0.0	0	0.0	0
	지 방 양 여 금	0	0.0	0	0.0	0
	조 정 교 부 금	0	0.0	0	0.0	0
	보 조 금	2,603,847	31.9	3,608,000	43.4	△1,004,153
	국고보조금	2,165,706	(26.5)	2,882,400	(34.7)	△716,694
	도비보조금	438,141	(5.4)	725,600	(8.7)	△287,459
	지 방 채	332,000	4.1	332,000	4.0	0

○ 세 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01.예산안	구성비	기정예산액	구성비	증 감	
합 계	8,151,724	100.0	8,305,121	100.0	△153,397	
세	경 상 예 산	1,145,427	14.1	1,141,189	13.7	4,238
	인 건 비	104,723	(1.3)	100,485	(1.2)	4,238
	경상적경비	1,040,704	(12.8)	1,040,704	(12.5)	0
	사 업 예 산	6,213,154	76.2	6,564,021	79.0	△350,867
	보조사업	2,712,133	(33.3)	3,608,000	(43.4)	△895,867
	자채사업	3,501,021	(42.9)	2,956,021	(35.6)	545,000
출	채 무 상 환	662,409	8.1	509,628	6.1	152,781
	지방채상환	662,409	(8.1)	509,628	(6.1)	152,781
	예 비 비 등	130,734	1.6	90,283	1.1	40,451
	예 비 비	119,706	(1.5)	79,255	(1.0)	40,451
	기 타	11,028	(0.1)	11,028	(0.1)	0

5. 계속비 사업조서 : 2001. 당초예산과 같음

6. 채무부담 행위조서 : 해당없음

7. 명시이월 사업조서 : 2001. 당초예산과 같음

8. 2001. 보조(국고, 도비, 양여금)사업 증감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	국고보조	도비보조	도분양여금	군분양여금	
경정예산안	계	76,549,136	35,155,948	16,440,088	6,695,508	18,257,592
	국비	35,044,911	19,758,539	0	0	15,286,372
	도비 (양여금)	15,964,186	3,367,363	7,139,295	5,422,528	35,000
	군비	25,540,039	12,030,046	9,300,793	1,272,980	2,936,220
기정예산안	계	67,633,801	33,044,643	12,146,060	6,390,815	16,052,283
	국비	34,155,150	20,203,833	0	0	13,951,317
	도비 (양여금)	15,368,190	3,310,314	6,655,838	5,227,038	175,000
	군비	18,110,461	9,530,496	5,490,222	1,163,777	1,925,966
증감	계	8,915,335	2,111,305	4,294,028	304,693	2,205,309
	국비	889,761	△445,294	0	0	1,335,055
	도비 (양여금)	595,996	57,049	483,457	195,490	△140,000
	군비	7,429,578	2,499,550	3,810,571	109,203	1,010,254

9.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·세출예산안 총괄

○ 세 입

(단위 : 천원)

부서별	계			일반회계			특별회계		
	2001.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	2001.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	2001.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
합 계	92,765,304	76,845,689	15,919,615	87,448,976	71,133,464	16,315,512	5,316,328	5,712,225	△395,897
기획감사실	58,430,719	43,792,075	14,638,644	56,985,152	42,847,517	14,137,635	1,445,567	944,558	501,009
자치행정과	88,368	79,208	9,160	88,368	79,208	9,160	0	0	0
종합민원실	559,632	704,648	△145,016	533,619	677,596	△143,977	26,013	27,052	△1,039
문화관광과	4,326,629	4,177,327	149,302	4,326,629	4,177,327	149,302	0	0	0
재무과	16,764,040	14,757,040	2,007,000	16,764,040	14,757,040	2,007,000	0	0	0
사회복지과	11,553,886	12,318,000	△764,114	7,709,138	7,577,385	131,753	3,844,748	4,740,615	△895,867
보건소	712,096	687,457	24,639	712,096	687,457	24,639	0	0	0
당항포 관리사무소	329,934	329,934	0	329,934	329,934	0	0	0	0

○ 세 출

(단위 : 천원)

부 서 별	계			일 반 회 계			특 별 회 계		
	2001.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	2001.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	2001.예산안	기정예산액	증 감
합 계	58,188,404	55,503,323	2,685,081	52,872,076	49,791,098	3,080,978	5,316,328	5,712,225	△395,897
기획감사실	17,882,981	17,779,265	103,716	16,437,414	16,834,707	△397,293	1,445,567	944,558	501,009
자치행정과	5,770,834	5,510,188	260,646	5,770,834	5,510,188	260,646	0	0	0
종합민원실	841,654	953,852	△112,198	815,641	926,800	△111,159	26,013	27,052	△1,039
문화관광과	10,078,215	8,468,376	1,609,839	10,078,215	8,468,376	1,609,839	0	0	0
재 무 과	1,812,142	1,762,656	49,486	1,812,142	1,762,656	49,486	0	0	0
사회복지과	14,991,094	14,935,953	55,141	11,146,346	10,195,338	951,008	3,844,748	4,740,615	△895,867
보 건 소	3,593,540	3,188,940	404,600	3,593,540	3,188,940	404,600	0	0	0
당 항 포 관리사무소	462,398	274,494	187,904	462,398	274,494	187,904	0	0	0
읍면 예산	2,755,546	2,629,599	125,947	2,755,546	2,629,599	125,947			

10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·도비 보조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.5%인 154억8,216만원 증가한 1,397억7,927만5천원으로서
-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.5%인 156억3,555만7천원이 증가한 1,316억2,755만1천원이며,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.8%인 1억 5,339만7천원이 감소된 81억5,172만4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음.
-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20.7%인 159억1,961만5천원이 증가한 927억6,530만4천원이며,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.8%인 26억8,508만1천원이 증가한 581억8,840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.
- 특히, 일반회계 예산중 추경예산액의 70.9%인 110억6,817만원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 사회개발비에 중점 계상되었고, 나머지는 경제개발비에 28.7%, 기타경비에 0.4%로 계상함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아짐.
- 그러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의 국·도비 삭감 부문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기금의 국·도비보조금 10억415만3천원 삭감 부문에 대하여는 심히 우려가 되는 항목으로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안마련이 요구되며,
-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정책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, 전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사업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 심의가 요구되나 국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사료됨.
- 특히, 중점 심의할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, 우수학교 육성지원사업, 자치행정과 소관,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, 종합 민원실 소관, 장계지구 이주단지주변 정비사업,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, 문화관광과 소관,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, 전국 궁도대회개최비 지원, 도 종합 관광안내소 운영비 지원, 공통테마파크 조성사업, 재무과 소관, 읍면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트기 구입비, 사회복지과 소관,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,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(국·도비) 삭감관계, 보건소 소관, 건강검진 사업,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, 군 이미지 옥상광고탑 설치관계, 구 회원의 집 개축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였음.

11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관내 13개 중·고등학교를 어떻게 우수학교로 육성시킬 것인지
- 답 :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순수 자체사업으로서 13개 중·고등학교 전체를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관계자 협의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우수학교 육성방안을 최종 결정하여 시행할 것임.
- 문 : 경남도내 타 시·군에서 지급하는 사례는
- 답 : 창원시의 5개 시·군에서 시행하고 있음.
- 문 : 객관적 기준이 없어 학교간 위화감이나 괴리감 발생으로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
- 답 : 학생 위주가 아니라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 과 교사들의 사기양양으로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함이며,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불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
- 문 : 일일명예교사 초청교육 강사는 누구를 초청할 계획인지
- 답 : 퇴직 공무원을 우선할 것임.
- 문 : 현재 읍·면 예비군 중대에서 운용하는 PC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는
- 답 : 전 읍·면 예비군 중대 PC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부 구식인 조립식 제품이며,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서 예비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체가 불가피함.
- 문 : 장계지구 이주단지 주변정비 사업은
- 답 : 고성 자동차 전문학원 진입로 주변의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함.
- 문 : 전국 궁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사유는
- 답 : 제2회 고성공룡나라 축제행사와 병행하여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룡나라 축제행사를 극대화하기 위함.
- 문 :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떠한 종목에 누구를 배치할 계획인지
- 답 : 우리 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배드민턴 외 4개종목으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자 중 우수 적격자를 선발하고, 부족시 도내에서 우수 지도자를 발탁하여 배치할 계획임.
- 문 :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사유는
- 답 : 2000년도까지는 의료보호 진료비를 100% 국·도비를 지원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국비를 80% 지원하고 나머지 20%는 도비와 군비로 부담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임.
- 문 :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군비를 부담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유는
- 답 :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.

10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·도비 보조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이 발생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.5%인 154억8,216만원 증가한 1,397억7,927만5천원으로서
-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.5%인 156억3,555만7천원이 증가한 1,316억2,755만1천원이며,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.8%인 1억 5,339만7천원이 감소된 81억5,172만4천원 규모로 편성되었음.
- 그 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20.7%인 159억1,961만5천원이 증가한 927억6,530만4천원이며,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.8%인 26억8,508만1천원이 증가한 581억8,840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.
- 특히, 일반회계 예산중 추경예산액의 70.9%인 110억6,817만원은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비 등 사회개발비에 중점 계상되었고, 나머지는 경제개발비에 28.7%, 기타경비에 0.4%로 계상함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보아짐.
- 그러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의 국·도비 삭감 부문과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기금의 국·도비보조금 10억415만3천원 삭감 부문에 대하여는 심히 우려가 되는 항목으로서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안마련이 요구되며,
-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정책판단의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, 전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사업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 심의가 요구되나 국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사료됨.
- 특히, 중점 심의할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, 우수학교 육성지원사업, 자치행정과 소관,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, 종합 민원실 소관, 장계지구 이주단지주변 정비사업, 농어촌주택 지붕개량사업, 문화관광과 소관, 소가야문화촌 조성사업, 전국 궁도대회개최비 지원, 도 종합 관광안내소 운영비 지원,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, 재무과 소관, 읍면 지방세 고지서 출력용 OCR프린트기 구입비, 사회복지과 소관,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, 의료보호진료비 보조금(국·도비) 삭감관계, 보건소 소관, 건강검진 사업,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, 군 이미지 옥상광고탑 설치관계, 구 회원의 집 개축공사 등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였음.

11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관내 13개 중·고등학교를 어떻게 우수학교로 육성시킬 것인지
- 답 :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순수 자체사업으로서 13개 중·고등학교 전체를 육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관계자 협의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우수학교 육성방안을 최종 결정하여 시행할 것임.
- 문 : 경남도내 타 시·군에서 지급하는 사례는
- 답 : 창원시의 5개 시·군에서 시행하고 있음.
- 문 : 객관적 기준이 없어 학교간 위화감이나 괴리감 발생으로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
- 답 : 학생 위주가 아니라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교사들의 사기양양으로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함이며,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.
- 문 : 일일명예교사 초청교육 강사는 누구를 초청할 계획인지
- 답 : 퇴직 공무원을 우선할 것임.
- 문 : 현재 읍·면 예비군 중대에서 운용하는 PC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는
- 답 : 전 읍·면 예비군 중대 PC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부 구식인 조립식 제품이며, 사후관리 미흡으로 사용이 곤란한 상태로서 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체가 불가피함.
- 문 : 장계지구 이주단지 주변정비 사업은
- 답 : 고성 자동차 전문학원 진입로 주변의 소하천을 정비하기 위함.
- 문 : 전국 궁도대회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사유는
- 답 : 제2회 고성공룡나라 축제행사와 병행하여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공룡나라 축제행사를 극대화하기 위함.
- 문 :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떠한 종목에 누구를 배치할 계획인지
- 답 : 우리 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패드민턴 외 4개종목으로서 군내에 거주하는 자 중 우수 적격자를 선발하고, 부족시 도내에서 우수 지도자를 발탁하여 배치할 계획임.
- 문 :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한 사유는
- 답 : 2000년도까지는 의료보호 진료비를 100% 국·도비를 지원하였으나 2001년도부터 국비를 80% 지원하고 나머지 20%는 도비와 군비로 부담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임.
- 문 :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요양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군비를 부담하는데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유는
- 답 : 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.

- 문 : 의료보호기금의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서 국·도비는 삭감되고, 군비가 증액된 사유는
- 답 : 국·도비가 삭감되어도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예산 사정상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군비 20%를 계상한 것임.
- 문 : 군 이미지 옥상 광고탑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
- 답 : 마산역 앞 사거리 옥일빌딩 옥상의 기존 광고탑을 2년간 임대하여 가로 18M, 세로 10M의 사각형에 고성군과 당항포의 이미지를 부착할 계획임.

12. 토 론 : 없음

13. 심사결과

가. 세입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군수제출안	심 사 사 항		수 정 안	비 고
		삭 감 액	증 액		
계	92,765,304	0	0	92,765,304	
일반회계	87,448,976	0	0	87,448,976	
특별회계	5,316,328	0	0	5,316,328	

나. 세출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군수제출안	심 사 사 항		수 정 안	비 고
		삭 감 액	증 액		
계	58,188,404	30,500	30,500	58,188,404	
일반회계	52,872,076	30,500	30,500	52,872,076	
특별회계	5,316,328	0	0	5,316,328	

다. 예산삭감 및 수정현황

- 세입부분 : 변동없음
- 세출부분 : 1210-1211-220-308 자치단체이전 외 1건에 30,500천원을 삭감하여 5410-5411-400-801 예비비로 이관 계상함.

덧붙임 : 1.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증감액조서 1부.

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削減額調書

總 務 委 員 會

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削減額調書

一般會計
歳出部門

(單位：千圓)

科 目				郡守提出 豫算案	修 正 案		修 正 豫算額	修 正 内 譯
項	細項	細細項	目		減 額	増 額		
1210	1211	220	308 자치단체이전	45,500	15,500		30,000	05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○ 우수학교 육성지원 보조 15,500
1212	1212	120	307 민간이전	55,000	15,000		40,000	02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○ 사회단체보조금(POOL) 15,000
계					₩30,500-			

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増額調書

總 務 委 員 會

2001年度 第1回 追加更正歳入歳出豫算案 増額調書

一般會計
歳出部門

(單位：千圓)

科 目				郡守提出 豫算案	修 正 案		修 正 豫算額	修 正 内 譯
項	細項	細細項	目		減 額	増 額		
5410	5411	400	801 예비비	1,662,955		30,500	1,693,455	○ 예비비
계						₩30,500-		